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2. 5 선고 2024가단275356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2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8.77㎡를 인도하고,
나. 2023. 12. 20.부터 가.항 기재 선내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175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송호섭

별지